



의안번호

제112호

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9. 11.

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1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9. 11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기준 마련(안 제2조)
- 다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 마련(안 제3조)
- 라. 규칙 운영 관련 근거 마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붙임 참조)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 - 2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8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2) 성별영향평가 :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절차 종료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
 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가) 예고기간 : 2019. 8. 7. ~ 2019. 8. 27.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5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인사과(041-635-3534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, 심사·선정, 편집,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의 감독·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행 정 지 원 과	이 영 태
	인 사 팀 장	윤 승 우
	담 당 자	임 희 영 (041-746-5232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시험 종사자 시험 수당 지급
- 관련 조문 : 본 조례안 제2조(수당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: 5명 기준(내부1 + 외부4)

구분		단위	지급기준
채용 시험 (면접)	재직자 (공무원)	반일	1인/1일
		전일	"
	외부 전문가	반일	"
		전일	"

나. 추계결과(5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일반회계	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산출 기초	시험 수당	내부	1명*18회*150,000 =2,700,000	1명*20회*150,000 =2,700,000	1명*20회*150,000 =2,700,000	1명*20회*150,000 =2,700,000	1명*20회*150,000 =2,700,000	
		외부	4명*18회*200,000 = 14,400,000	4명*20회*200,000 = 14,400,000	4명*20회*200,000 = 14,400,000	4명*20회*200,000 = 14,400,000	4명*20회*200,000 = 14,400,000	

※ 2018년도 채용 시험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: 매년 채용 횟수에 따라 상이

다. 재원조달 방안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시비(지방세)	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
친절행정국 행정지원과장 이 영 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	
시 비							
세 출	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일반운영비	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재원 조달	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	지방세	17,100	19,000	19,000	19,000	19,000	93,1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

제48조(시험위원 등)

⑤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